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06
----------	-----

2023년 05월 0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송재혁 의원
나. 제안일 : 2023년 03월 29일
다. 회부일 : 2023년 04월 03일
라. 상정일 :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4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3.08.01.) 및 시행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포괄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기능 및 목적과 중복되고 독자적 실효성을 찾기 어려움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규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2023.04.06 ~ 04.10.)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부조리 조례’이라 함)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방지법」(법률 제6494호, 제정 2001.7.24., 시행 2002.12.5.)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인 1999년 1월 제정된 자치조례로,
 - 부조리 신고대상(제3조), 신고 방법(제4조), 신고자의 보호(제5조),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제6조부터 제9조),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0조), 지급 방법(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부조리 조례는 1999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3547호)로 제정·시행되어 5차례의 일부개정과 4차례의 타법개정 등 총 9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2013년 8월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국민익위법’이라 함)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 등을 포괄하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익제보 조례’라고 함)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 및 관련 보상 등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음.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3년 4월 참여연대, 호루라기 재단, 한국투명성기구, 공익제보자지원모임 등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 단체 등이 “공익제보자지원조례” 청원에 따라 6월에 서울시 감사관, 서울시의회 의회 조례 제정 실무협의, 추진 단체와 서울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 201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하였고, 8월 1일에 공포·시행되었음.¹⁾

〈 감사위원회 의견 : 원안 동의 〉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목적 및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규정의 통일성을 위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부조리 조례”는 서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이후 총 126건, 약 2억 3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999년
건수	126	3	4	5	7	4	3	6	94
금액	233,736	4,810	5,000	5,000	5,000	5,000	5,000	9,800	194,126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023년 3월 제출자료 재인용.

※ 최근 5년간('17년 ~ '22년) 부조리 신고 내용별 보상금 지급 현황은 <붙임 1> 자료 참조.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 7.0』, 2021년 12월, 24면 참조.

- 다만, 조례는 실효성 상실 또는 다른 조례에서도 그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동일성 등을 위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폐지하는바, 폐지 사유가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먼저, 2013년 8월 제정·시행된 “공익제보 조례”는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유관단체 포함) 신고대상 및 공익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까지 포함하여 ‘공익제보’로 정의(제2조제1호)함에 따라 “부조리 조례”에서 정한 부조리 신고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 또한, ‘부조리 신고’와 ‘공익제보 신고’ 방법에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공익제보 신고’의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안심번호사를 통한 신고로(“공익제보 조례” 제8조제2항), 신고자 보호에 철저하며(붙임 2) 공익신고, 비리(부조리) 신고 접수 처리 절차 참조),
 - ‘부조리 신고’와 ‘공익제보 신고’ 조사기간은 60일로 동일하며, “공익제보 조례”에서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조리 신고자의 보호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현행 신고대상 등 비교 >

구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71개 법률 위반 행위(민간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조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등이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 손실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p>※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 대상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에서 부패신고(공직유관단체 포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에 포함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신고(공직유관단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의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직무수행(사적이해관계 신고,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절차 등)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 -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경조사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그 밖에 부패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신고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우편·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공익제도의 통합 처리 - 익명신고에 따른 변호사 지원
<p>처리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조사를 완료. 3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 10일 이내 통지, 조사 기간 60일 이내,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 연장

○ 그리고, “부조리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고(제10조), 지급기준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나 “공익제보 조례”에서는 부패 신고(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상한 기준은 없고, 확정금액의 30%가 지급되며(제11조), 보상금이 아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도 규정(제11조의2)하고 있음.

※ 특히, “공익제보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635호)” 2017년 9월 21일 일부개정·시행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할 때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상대상 가액 대비 정률(100분의 30)로서 상한을 두지 않고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음. 이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촉진하고, 서울시 고유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음(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의안번호 2046, 서운기의원 외 11명, 2017년 8월 14일 발의).

〈 “공익제보 조례”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비교 〉

구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정의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지급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 부패행위 신고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 내·외부 공익신고자 - 부패행위 신고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지급 절차	신고자 보상금 신청에 따라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	추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구조금 신청에 따라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
지급 기준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상한 없음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최대 2억원	-

- 이는 동일한 ‘부패 신고(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부조리 조례”와 “공익제보 조례”에서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체계상 통일성 저해로 서울시 조례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부패 신고(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을 하나로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현행 부패신고(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비교 〉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한도액 : 2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한도액 : 상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준(별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신고유형</th> <th style="width: 35%;">지급기준</th> <th style="width: 40%;">보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td> <td>금품향응 수수액</td> <td>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td> </tr> <tr> <td rowspan="6">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td> <td>- 추정·환수액</td> <td></td> </tr> <tr> <td>1억원 이하</td> <td>추정·환수액의 20%</td> </tr> <tr> <td>1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2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4%</td> </tr> <tr> <td>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td> <td>7천6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td> </tr> <tr> <td>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td> <td>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td> </tr> <tr> <td>40억원 초과</td> <td>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td> </tr> <tr> <td rowspan="3">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td> <td>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td> <td>2억원 이내</td> </tr> <tr> <td>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td> <td>5천만원 이내</td> </tr> <tr> <td>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td> <td>2백만원 이내</td> </tr> </tbody> </table>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정·환수액		1억원 이하	추정·환수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2억원 이내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2백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준 :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의 30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정·환수액																										
	1억원 이하	추정·환수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2억원 이내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2백만원 이내																									

다. 종합의견

- “부조리 조례”에서 부조리(부패)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처리 절차 등은 “공익 제보 조례”에서 동일하게 규정함에 따라 동일 사안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서로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동일한 신고 내용도 어느 조례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바,

- “부조리 조례”를 폐지하고, 부패 신고(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도 “공익제보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 조례의 통일성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감사위원회는 “2013년 “공익제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패 신고(부조리 신고)’가 “부조리 조례”와 “공익제보 조례”에서 동일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적기에 “부조리 조례”의 개정·폐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는바, 향후에는 소관 조례에 대하여 법적 체계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부조리 조례” 폐지는 동일한 사안을 “공익제보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공익제보 조례”에 따라 ‘부패 신고(부조리 신고)’ 등 신고대상이 더 넓고,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송재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0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송재혁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김 경, 김성준,
김영철, 남창진, 박철성,
송경택, 아이수루,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정준호, 한 신, 홍국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3.08.01.) 및 시행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포괄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기능 및 목적과 중복되고 독자적 실효성을 찾기 어려움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규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